

# 해상교통안전진단시 안전대책 시행주체에 대한 고찰

-VTS 중심으로-

정재용\*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요 약** :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사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법적인 사항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는 안전취약요소를 도출하고 취약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자의 의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시행주체를 정해야 한다.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는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존재하지만 사업에 대한 심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 처분기관과의 중속적인 관계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가 그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VTS를 중심으로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진단, 안전취약요소, 조치사항, 시행주체, VTS



### 신보령화력 1, 2호기 해상교통안전진단

안전취약요소	사업자 조치 계획
[VTS 시스템] 대전항 신축동 또는 원산도에 Radar를 설치 필요	> 관련기간과 충분히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선회장] 부두 전면 선회장문제 [부두 간섭 관련]에 대한 검토 필요	> 부두 이안시 선박 선회장이 항로를 침범하므로 VTS에서 적절한 등체가 되도록 관리청과 협의하겠음

### 보령 LNG 터미널 해상교통안전진단

VTS 관제 필요	VTS 관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하겠음	보령항 해상교통관제 센터 신설 등을 관계기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보령화력 등)과 협의하여 2017년 1월 까지 VTS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보령 LNG 터미널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보령화력과 협의)
VTS 관제 요건 확보	신설될 보령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운영요건 및 관제사의 확보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수산부 본부와 협의하여 관제인력 및 운영요건을 확보할 것임.	대산지방 해양항만청

† 교신저자 : 종신회원, jyjong@mmu.ac.kr

### 안전대책 시행주체?

- > 지자체 관리 무역항(충남도청)
- > 중부발전
  - 신보령 1,
  - 보령화력 1, 2, 3
- > 보령 LNG 터미널
- > VTS 시설 - 보령 LNG 터미널(국민안전처)
- > VTS 운영요원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국민안전처)

### 삼전포항 고성하이화력발전소 해상교통안전진단



### 안전대책 시행주체?

- > 여객선 부두
- > 국가부두
- > 고성화력발전소
- > VTS 시설 - 고성하이화력발전소
- > VTS 운영요원 - ?
- > 시설과 운영요원이 별개의 기관?

### 거제 고현항 재개발 사업 해상교통안전진단



### 과업대상 위치



### 안전대책 수행주체?

- > 삼성중공업에서 부두 축조시 작업선박으로 인한 불편으로 인해 VTS를 사업자에게 요구
- > VTS 시설 - 사업자
- > VTS 운영요원 - ?

## 평택 당진항 서부두 해상교통안전진단



## 안전대책 수행주체?

- > 현재 태영 그레이 부두 5만DWT 운영 중
- > 장래 항만 개발로 인한 부두 개발
- > 여객선 등 다양한 사업자 존재
- > 사업자가 VTS 시설 확장의 주체?

## 결론

- > 사업자가 할 수 없는 안전대책 다수 존재함
- > 처분기관(충남도)
- > 국민안전처
  
- > 부두는 국가 인프라의 구축
- > 안전진단 시기에 따라 안전대책 시행주체 ?
- > 처분기관의 역할(조건부 승인)
- > 국가기관의 책무(사업자가 알아서 하라)

이 연구는 지에스건설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평택당진항 서부두 내항 잡화부두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습니다.